

유럽 PL제도의 태동과 변천

한국전기제품안전진흥원 교육홍보부 이사 나경수

02) 579-3291 ksrha@esak.or.kr

1. 제조물책임의 법리

제조물책임(PL)이란 시장에 유통된 제품에 흠결이 있어서 그로 말미암아 사용자에게 신체상의 손해를 입히거나 그 상품이외에 사용자의 다른 재산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제품의 제조자나 판매업자 혹은 유통업자에게 손해의 배상책임을 지우는 것을 말한다.

제조자에 대한 귀책근거, 즉 비난가능성은 제조자가 위험성 있는 결함제품을 시장에 내놓음으로써 위험을 야기했다는 데 있다. 이때 제조자가 자기의 결함제품이나 위험성을 인식하였는가는 전연 문제삼지 않는다.

특히 제조물책임은 민사법적 특별법의 성격을 지닌 법리로서 탄생하였는데, 그 특수성으로는 우선 확대손해의 발생을 들 수 있다.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야기된 손해는 완성품의 이행이익을 초과하여 사용자의 신체나 생명 그리고 기타 재산에 발생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제조물책임에서는 결함으로 인한 직접손해는 물론이고 이러한 결함에 의해 야기된 확대손해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

또 제조물은 불특정 다수가 사용인이 되는 경우

가 많다. 특히 전기제품과 같이 가전제품이 주류인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그래서 피해자가 특정제품의 매수인뿐만 아니라 사용자나 운송자 등 누구에게나 발생할수 있다는데 그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리고 제조물피해에 대한 책임은 일차적으로 결함제품을 만들어낸 제조자에게 있으며, 2차적으로는 그러한 제품을 유통시킨 매도인, 도매상, 수입상에게도 이어진다. 이것이 소위 책임주체의 특수성이다. 다만 제조자, 판매상, 유통상, 도매상, 수입상은 그 제품 판매계약의 계약당사자는 아니다.

오늘날과 같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고도의 산업사회에 있어서는 제품의 생산과 유통은 고도의 기술, 다단계, 기업비밀로 말미암아 제조물의 피해자가 피해의 원인을 밝히거나 설명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가 제조나 유통상의 주의의무의 위반에 대해 입증을 해야 한다면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제조물책임법에서는 책임요건의 특수성으로 책임발생의 핵심을 과실에 두지 않고 제조물의 결함에 둔 것이다. 이것이 제조물책임의 요제인 것이다.

이와같은 제조물책임의 특수성에 의해서 제조물의 결함과 제조업자의 과실요건에 대해서는 몇가지의 논의가 있어 왔던 것도 사실이다. 여기서 제조물의 결함과 관련된 결함의 책임문제인데 이것이 매개성의 문제이다. 제조물책임의 법리에 있어서 책임발생의 핵심적인 요소는 제조물에 존재하는 결함에 있다는 것이다. 제조물책임에 있어서 결함이란 통상 예견된 제조물의 사용에 있어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부당한 위험을 발생시킨 제조물의 결함을 지칭한다.

이러한 결함의 유형에는 설계상의 결함, 제조과정상의 결함, 그리고 설명이나 주의, 경고상의 결함 등이 있다.

또 제조자의 과실에 있어서는 원칙적인 책임요건으로의 과실이 있다. 원칙적인 불법행위에 의할 경우에는 피해자가 제조자의 제품결함에 대한 과실이 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제품의 결함이 제조자의 과실행위에 의해 생긴 것과 그 제품의 유통이 제조자의 의도 또는 과실로 말미암아 이루어 졌음을 밝힘으로써 증명된다.

그러나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제조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사실상 추정함으로써 피해자의 과실입증의 어려움을 완화시키고 있다. 피해자가 결함의 존재 및 결함과 손해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면 제조자의 과실에 대한 사실상의 추정이 행하여져, 과실의 증명책임이 제조자에게 전가되어야 한다고 한다. 이것을 제조물책임에서 이른바 과실의 사실상 추정(presumption of fact)이라고 한다.

제조물책임에서는 주의나 경고 의무의 가중을 특

히 강조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과실의 인정이 바로 그것이다. 제조자의 과실이란 제조자가 짚어진 주의의무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게을리하고 소홀히 한 것을 의미한다. 제조자는 각종의 특별법규에 의하여 제조규준이나 기술기준 등 기타의 의무를 부여받으므로 이러한 기준이나 의무에 어긋나는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한 손해의 경우는 제조자의 과실로 인정할 수 있다.

또 위험책임에 유사한 운용을 들 수 있다. 제조물책임을 위험책임에 가깝게 하여 과실이라는 책임원인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제조자의 주의의무를 포괄적인 위험방지의무로 이해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품의 결함 등의 위험요인들이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반증이 없는 한 주의의무의 태만 혹은 위반이 있었다고 판정함이 필요하다고 한다. 판례의 경우 제조자가 부담하는 주의의무를 사회생활상 요구되는 위험방지의무로서 이해되어야 한다. 그래서 제품에 결함이 존재하여 그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위반이 있다고 추정된다. 여기서 국가에 따라서는 결함의 종류에 따라 주의의무의 차등화를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

입법여부에 관하여서는, 위와 같은 취지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제조물책임법은 2000년 1월 12일에 법률 제6109호로 제정되어 공포되었는데,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는 현재까지 약 30여개국이 시행하고 있으며, OECD가입국중에서는 우리나라가 PL법을 시행하는 마지막 나라가 되었다.

2. EC지침의 성립현황과 가맹국의 추진

1) EC지침의 성립현황

EEC·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 유럽 원자력공동체의 3자를 통합한 기구가 유럽공동체(E.C. : European Communities)인데, 1967년에 발족되었다. 지금의 EU는 1994년부터 EC에서 EU로 변경되었다. EU와 EU주변국가의 제조물책임법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1985년 7월 25일에 EC각료이사회(The Council of Ministers)가 채택한 EC지침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EC지침은 ‘결함제품의 책임에 관한 EC가맹국의 법률, 명령 및 행정규칙의 조정을 위한 이사회 지침’인데 1985년 7월 25에 각료 이사회에서 결정된 지침이다.

EC지침은 직접적으로 EU가맹국가의 국민의 권리의무관계를 규제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맹국의 지침대로 입법형식은 관계없이 내용을 갖추는 국내입법을 추진하는 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것이다.

EC지침의 취지는 이러한 지침의 내용에 기초하여 각국에서 국내 입법을 실시함으로써 EU내의 통일적인 제조물책임법제도를 실현하는데에 있다.

그러나 각국의 풍습과 습관 및 사회환경과 제반 산업기반의 차이로 인하여 파생되는 상이한 의견에 대하여서는 타협과 절충의 과제로 남겨 두고 있다. 그래서 이를 옵션(option)조항으로 유보되어 각국에 선택사항으로 남겨놓으므로써 그 만큼 유연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선택조항의 채택여부로서 제1차 농산물 및 수렵물에 대하여 동법의 적용여부 및 개발위험의 향반의 인정여부와 책임한도액의 설정여부가 앞으로 풀어야 할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 가맹국의 입법 추진

1988년 5월에 프랑스가 마지막으로 동참함으로써 전 EU가맹국은 자국의 입법을 완료하기에 이르렀다.

EC지침채택 당시의 EU가맹국의 입법현황

	국 가	입법시기(시행)
1	영국	1988. 3. 1
2	그리스	1988. 7. 30
3	이탈리아	1988. 7. 30
4	룩셈부르크	1988. 5. 2
5	덴마크	1988. 6. 10
6	포르투갈	1988. 11. 21
7	독일	1990. 1. 1
8	네덜란드	1990. 11. 1
9	벨기에	1991. 4. 1
10	프랑스	1998. 5. 21(공포)
11	스페인	1994. 7. 7
12	아일랜드	1991. 12. 13

3. EC지침에 의거한 통일화의 이유

EC지침은 EU지역내에서의 제조물책임법제도의 통일화를 꾀할 목적으로 채택되었다.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던 것은 피해자가 각국에서 발생하였던 1960년대의 탈리도마이드 사건 및 1973년의 모토코항공사건의 피해자가 각국의 제조물책임법제도의 괴리에서 오는 불공정과 불공평에 대한 일종의 대책이었다.

실질적인 이유로는 제조물책임법제도의 차이에서 생기는 불공정은 EC역내에서의 상호간 불공정한 경쟁조건을 유발시켰다. 또한 역내에서의 상품거래의 유통이 현저히 저해되었고 소비자보호의 취지가 퇴색되어 예폭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만연되었다.

4. EC지침 (『결함제품의 책임에 EC가맹국의 법률, 명령, 행정규조정을 위한 이사회 지침』)

유럽공동체이사회는 유럽경제공동체가 정한 협정 특히 협정 제100조 위원회에 의한 제안 EC총회의 의견, 경제·사회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하고 또한 다음의 이유에 의거 본지침을 채택하였다.

결함제품의 책임소지에 관한 국내법이 가맹국마다 상이함에 따라 공동체시장내에서 경쟁이 제대로 되지 못하며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으며, 결함제품으로 인하여 인체,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소비자를 서로 다르게 보호할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의 책임을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가맹국간에 법률의 조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제조업자에게 무과실책임을 과하는 것이 전문분야에 중대해가고 있는 현대에 있어서 최신기술에 의한 생산에 수반하는 위험의 공평한 배분이라고 하는 문제를 적절히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인 것이다.

무과실책임을 공업적으로 생산된 동산에 적용된다. 그러므로 농업생산물과 수렵물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당해제품에 결함을 일으킬만한 공업적 성질을 가지는 가공이 되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것을 배제하는 것이 적절하다. 본지침에서 규정하는 책임은 부동산 건설에 사용하는 재료 혹은 부동산의 설비품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생산자가 공급한 최종생산물, 부품 또는 원재료에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보호의 관점에서 그 생산에 관계한 모든 자에게 책임을 과하는 것으로 한다. 같은 이유에서 EC내에 제품을 수입한 자, 성명이나 상표, 기타 자타상품 식별표지를 부착시킴으로써 스스로를 생산자로 표시한 자나 생산자의 특징이 불가능한 제품을 공급한 자 등에 대하여도 책임을 확대하는 것으로 한다.

동일한 손해에 대해 복수의 책임자가 있을 경우에는 소비자보호에 입각해서 피해자는 그 누구에 대해서도 손해의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제품의 결함이란 소비자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것이 사용목적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사회일반이 당연히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을 결여하고 있었는가, 아닌가의 점에 비추어 결정하여야 한다. 안전성은 일정한 상황

하에서 합리적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제품의 오용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것을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피해자와 생산자간의 위험의 공평한 분담이란, 생산자가 면책되는 사유가 존재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책임을 면하는 것을 의미한다.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생산자의 책임은 생산자이외의 자의 작위 또는 부작위가 손해발생에 기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경감될 수는 없다. 다만 사고의 발생에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책임이 경감되거나 면제된다.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재산에 손해배상 뿐 아니라 사망 상해에 대한 보상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재산에 대한 보상은 개인이 사용하거나 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동산에 한정하며 더욱이 과다한 소송을 피하기 위하여 일정액까지를 면책하는 것으로 한다. 또한 본지침은 적절한 경우에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법에 의거해서 지불되어야 하는 위자료 및 기타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보상에 대하여 어떠한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피해자와 생산자 쌍방을 위하여 소를 통해 청구하는 기간에 일정한 제한을 둔다. 시대의 흐름과 더불어 제품은 구식이 되는 한편 보다 엄격한 안전기준이 설정되고 과학기술의 수준은 계속해서 발전한다. 그러므로 생산자에게 결함에 대해 무기한으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적당한 기간후에는 책임은 소멸하는 것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계속중인 청구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

소비자보호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피해자에

대한 생산자의 책임에 관하여는 계약상 면책을 인정하지 않는다.

가맹국의 법률제도에 기하여 피해자는 본지침의 규정에 없는 계약상 또는 비계약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다. 그리고 소비자의 효과적인 보호라는 목표달성에 도움이 되는 한 이들의 규정은 본지침의 영향을받음이 없이 유지된다. 또 이미 가맹국의 특별책임제도에 의거하여 의약제품분야에 있어서 소비자의 효과적인 보호가 이미 달성되고 있는 한 그 제도에 기한 청구는 마찬가지로 가능한 것으로서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원자력의 피해 또는 손해에 관한 책임에 대해서는 가맹국이 특별법으로 책임제도를 확립하고 있는 한 이런 유형의 손해에 대해서는 본지침에서 제외하는 것이 가능하다.

본지침에서는 일차농산물과 수렵물에 관해서 제외하고 있는바 소비자보호의 기본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제외가 부적당하다고 판단하는 가맹국도 있으리라고 본다. 이 경우에는 당해국에서 이러한 물품에까지 책임을 확대할 수도 있다.

또 생산자가 제품을 유통시킨 시점의 과학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면 그 생산자는 면책될 수 있다는 규정이 소비자보호를 부당하게 제한한다고 생각하는 가맹국도 있을 수 있다. 그 경우에는 기존의 국내법을 유지하는 방법에 의하여 또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할 때에는 이러한 면책조치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다만 새로운 법률을 제정할 때에는 이러한 제약(derogation)을 이용함에 있어 만약 가능하다면

공동체 전역에서 소비자보호의 수준을 통일적으로 높이기 위해서 공동체의 대기절차(stand-still procedure)에 따라야 한다. 대부분의 가맹국의 법적 전통을 고려한다면 생산자의 무과실책임에 금전적 상환을 실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러나 국가에 따라 상이한 법적 전통이 존재하므로 소비자에 대한 충분한 보호와 공동체시장의 정상적인 기능을 보장하는 범위에서 동일한 결함으로부터 발생한 사망 및 신체상해의 손해에 대한 전 배상액에 한도를 설정하는 무한책임의 적용제의 항목은 가맹국이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본지침에 의해서 발생한 각국의 조치는 현 단계에서는 불충분하나 보다 나은 조화로의 길은 아련된 셈이다. 따라서 이사회가 본지침의 운용에 관한 정기적인 보고나 경우에 따라서는 적당한 제언 등을 위원회로부터 받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지침중에서 가맹국에게 적용제의를 설정하고 있는 부분이 소비자보호와 공동체시장의 기능에 끼치는 영향에 관해서 실제적 경험을 집약할 만큼의 충분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재검토를 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제1조 제조자는 그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제2조 본지침에서 '제품'이란 제일차농산물과 수렵물을 제외한 모든 동산을 의미하며, 그 동산이 다른 동산 또는 부동산에 편입되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제3조 ① '제조자'란 완성품 제조자, 원재료 또는

부품 제조자 및 제품에 그 설명, 상표 기타 식별할 수 있는 표식을 부확함으로써 스스로를 제조자로 표시한 모든 자를 의미한다.

② 판매·대여·리스 기타 업으로서 배급을 목적으로 유럽공동체내에 제품을 수입하는 모든 자는 본지침상 그 제품의 제조자로 간주하며, 제조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 이것은 제조자의 책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제품의 제조자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및 수입품에 있어서 그 제품의 제조자 성명은 표시되어 있지만 본조 제2항에서 규정한 수입자의 신원이 표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급자를 제조자로 간주한다. 다만 공급자가 합리적인 기간내에 피해자에 대해서 제조자 또는 그 제품을 자기에게 공급한 자를 알려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피해자는 손해, 결함 및 결함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한다.

제5조 본지침의 규정에 의해 2인 또는 그 이상의 자가 동일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그들은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이것은 분담 혹은 구상권에 관한 국내법의 규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6조 ① 다음 사항을 포함한 모든 사정을 고려한 결과, 사람이 당연히 기대하는 안전성을 구비하지 아니한 제품은 결함이 있다.

- (a) 제품의 표시
 - (b) 제품이 그 사용하에 배속되는 것을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사용
 - (c) 제품이 유통된 시기
 - ② 제품이 유통된 이후에 보다 우수한 제품이 유통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당해 제품에 결함이 있다고 간주할 수는 없다.
- 제7조 제조자가 다음 각호의 1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본지침에서 규정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 (a) 제조자가 제품을 유통시키지 아니한 사실
 - (b) 상황을 고려할 때 그 제품이 제조자에 의해 유통된 시점에는 손해를 일으킨 결함이 존재하지 않았거나 또는 그 결함이 그 후에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높다는 사실
 - (c) 제품이 판매 기타 영리목적의 공급을 위하여 제조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 및 제조자의 영업활동의 일환으로서 제조 공급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
 - (d) 제품의 결함이 당국에서 정한 강제력 있는 규정을 따름으로써 발생하였다는 사실
 - (e) 제조자가 제품을 유통시킨 시점의 과학·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
 - (f) 부품 제조자의 경우는, 그 부품이 사용된 제품의 설계가 원인이 되어 결

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또는 그 제품 제조자의 지시에 따랐기 때문에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 제8조 ① 제품의 결함 및 제3자의 작위·부작위에 의해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제조자의 책임은 경감되지 아니한다. 이것은 분담이나 구상권에 관한 국내법의 규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② 모든 상황을 고려한 결과 그 손해가 제품의 결함 및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책임으로 돌아가는 제3자의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경우, 제조자의 책임은 감면될 수 있다.

제9조 제1조에서 '손해'란 다음을 의미한다.

- (1) 사망 또는 신체상해로 인해 발생한 손해
 - (2) 결함있는 제품 그 자체 이외의 모든 재산에 대한 손해 또는 멸실로서 그 재산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다만 500ECU를 면책으로 한다.
 - i) 통상 개인적인 사용 또는 소비를 위한 것으로서
 - ii) 피해자가 주로 자신의 개인적 사용 또는 소비를 위하여 사용했던 것
- 본조는 무형손해에 관한 국내법의 규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0조 ① 가맹국은 입법을 함에 있어서, 본지침에서 규정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출소기한을 3년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그 출소 기한은 원고가 손해, 결함 및

제조자의 신원을 알게된 날 또는 당연히 알았으리라고 생각되는 날부터 진행을 개시한다.

- ② 출소기한의 정지 또는 중단을 정한 가맹국의 법률은 본지침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11조 가맹국은 그 입법을 함에 있어서, 본지침에 의해 피해자에게 부여된 권리는 그 손해를 일으킨 당해 제품을 제조자가 유통시킨 날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하는 것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중에 피해자가 소송 절차를 개시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본지침에 의해 발생하는 제조자의 책임은, 피해자와의 책임제한 또는 책임배제조항에 의해 제한 또는 배제되지 아니한다.

제13조 본지침이 통보된 시점에 존재하는 계약상 또는 계약 외의 책임에 관한 법규정 혹은 특별책임제도 등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부여된 모든 권리는 본지침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14조 본지침은 원자력사고로 발생한 상해 또는 손해로서 가맹국에 의해 비준된 국제협정의 적용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조 ① 가맹국은

- (a)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지침 제13조의 '제품'에 계일차농산물과 수렵물이 포함된다는 뜻을 국내법으로 규정할 수 있다. 그리고
(b) 제7조 (e)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

품이 유통된 시점의 과학·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것을 제조자가 입증한 경우에도 제조자가 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을 그 입법상 유지하거나 본조 제2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규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b)에 규정한 규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가맹국은 그 계획중인 법안의 내용을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다른 가맹국에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당해 가맹국은, 위원회에 통지한 날로부터 9개월후에 위원회가 그 기간내에 당해 사항에 관한 본지침의 수정안을 이사회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만 그 계획중인 법안을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위원회가 전기 통지의 수령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해 가맹국에 대해서 이사회에 그 수정안을 제출할 의사가 있음을 통지하지 않는 때는 그 가맹국은 계획중인 법안의 실시를 보류하여야 한다. 위원회가 전기 9개월 이내에 이사회에 대해서 본지침의 전기 수정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가맹국은 그 수정안의 제출일로부터 다시 18개월간 그 계획중인 법안의 실시를 보류하여야 한다.

- ③ 본지침의 통보일로부터 10년후, 위원회는 제7조 (e) 및 본조 제1항(b)의 적용에 관한 법원의 결정이 소비자보호 및

공동체시장의 기능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가에 관하여 이사회에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사회는 상기보고서를 검토한 후 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또 유럽공동체 설립조약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제7조 (e)의 존폐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16조 ① 각 가맹국은 동일한 결함을 가진 동종의 제품에 의한 사망 또는 신체상해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자의 책임총액을 7,000만 ECU를 하회하지 않는 액으로 제한할 수 있다.

② 본지침 통고일로부터 10년후에 위원회는 본조 제1항에서 정한 책임총액 제한의 가맹국에 의한 실시가 소비자보호 및 공동체시장의 기능에 미친 영향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사회는 상기보고서를 검토한 후 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또 유럽공동체 설립조약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본조 제1항의 존폐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17조 본지침은 제19조에서 정하는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유통된 제품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8조 ① 본지침에서 ECU란 (EEU)규칙 제 3180-78호 및 개정(EEU)규칙 제 2626-84호에서 정하는 대로이다. 국내통화로의 환산은 본지침 채택일의 환율로 계산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는 5년마다 위원회의 제안을 받아 공동체의 관한 경제 및 통화의 변동 상황을 고려하여 본지침에서 정한 금액을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그 금액을 개정하여야 한다.

제19조 ① 가맹국은 본지침 통고일로부터 늦어도 3년 이내에 본지침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 규칙 및 행정규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가맹국은 즉시 그 내용을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5조 제2항에 규정된 절차는 본지침 통고일로부터 적용한다.

제20조 가맹국은 본지침이 규제하는 분야에서 이후 제정되는 국내법의 주요 규정의 내용을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 위원회는 5년마다 이사회에 본지침의 적용에 관한 보고서 및 필요한 경우 그에 대한 적절한 제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 본지침은 가맹국을 대상으로 한다.

5. EC지침의 내용

1) 무과실책임의 채용

미국의 엄격책임과 거의 동일한 법적 책임개념인 무과실책임의 채용을 제1조에서 언급하고 있다. 그 근거로 전문에서 위험책임의 원칙과 손실분산의 방법을 의중에 두고 있다. 물론 EC지침도 결함의 존재가 전제가 되며, 결함의 판단은 소비자의 통상 기대기준을 채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제품의 표시, 합리적으로 예견이 가능한 제품의 용도, 제품이

유통에 놓여진 방식 등의 제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사고발생후의 제품의 개선·개량이나 제품의 회수를 촉진할 정책적 취지에서 사고후에 제조자가 취한 설계변경, 경고의 추가, 제품의 회수 등 사고발생후의 개선 및 회수의 증거는 결함의 존재에 대한 증거로서 채택이 불가능하게 규정되어 있다.

미국에서의 기술수준의 향변과 유사한 개발위험의 향변은 각 국의 읍선사항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개발위험의 향변을 인정하고 있는 국가는 제품이 유통에 놓여진 시기의 과학이나 기술수준으로는 도저히 제품의 결함의 존재를 인식할 수 없었던 것을 제조자가 입증하였을 경우에는 면책을 일단 허용하고 있다.

2) 선의와 무과실

선의는 법률상 어떠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하고 도덕적인 의미는 포함하지 않는다. 이를테면 선의의 제3자나 선의의 점유자와 같은 것이다. 무과실은 과실 즉 주의의무위반이 없는 행위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민법상 선의와 함께 쓰이며, 선의인 것에 관해 과실이 없는 것을 가리킨다. '선의이며 과실없이'와 같은 것이다. 물건의 점유에 관하여서는 점유자의 선의는 추정되지만 그러나 무과실은 추정되지 아니한다.

3) 무과실책임

손해의 발생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그 배상책임을 지게 하는 것으로, 과실책임

에 대비(對比)된다. 계약책임에도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불법행위책임에 관하여 주로 논의되고 있다.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무과실책임은 가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을 침해한 점에 책임 귀속의 근거를 두는 것이 아니고, 타인의 법익 침해라고 하는 결과의 발생에 원인을 주었다는 점에 그 근거를 둔다는 의미에서 원인책임주의라고도 칭한다. 따라서 법의 비난이 과실에 향하지 않고 결과에 향하여지고 있다는 의미에서 결과책임주의라고도 한다.

‘과실이 없으면 책임이 없다’고 하는 과실책임주의는 자본주의적 자유주의를 그 이념으로 하는 근대시민법의 대원칙의 하나이기도 하다. 그러나 오늘날의 대기업은 한쪽에 있어서는 거액의 이익을 얻음과 동시에, 다른 한쪽에 있어서는 기업내외 근로자 및 일반인에 대하여 많은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아울러 현대 사회생활의 복잡화와 더불어 종래의 과실책임주의로서는 피해자의 보호를 충분히 시행하지 못하고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손해의 공평한 부담을 피하기 위하여 무과실책임의 이론이 진전을 보게 된 것이다.

무과실책임을 인정하는 근거로서는, 위험한 시설의 소유자는 그것에 의하여 생기는 손해에 대하여서 절대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는 위험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다. 또 큰 이익이 들어가는데도 손실까지도 돌아가게 해야 한다고 하는 보상책임론이 있으며, 손해의 원인을 준 자에게 그 배상책임을 지

위야 한다고 하는 원인책임주의를 둘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법행위에 의한 배상책임은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주장하는 논리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하는 구체적 공평주의 등이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 법제에 있어서는, 공작물소유자의 책임을 규정한 민법 제758조는 무과실책임을 인정한 전형적인 예이다. 그리고 책임무능력자를 감독하는 자의 책임, 사용자의 책임, 공작물의 점유자의 책임, 동물의 점유자의 책임은 상대적 무과실책임이라고 하지만 이러한 예들은 진정한 무과실책임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상법에서도 선박소유자의 책임이나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등을 무과실책임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역시 예외적인 규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특별법은 근대적 대기업의 위험성이나 보장성을 고려하여 근로자 재해보상제도 그리고 광해(輻射)배상제도와 국가배상법상의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영조물(營造物)의 설치 및 관리의 하자에 대한 배상책임 등 무과실책임을 인정하는 예가 점차 많아져 가고 있는 추세에 있다.

4) 제조물의 범위

EC지침의 대상이 되는 제조물은 동산에 한정하고 있으며 부동산은 제외되었다. 즉 제일차농산물과 수렵물을 제외한 모든 동산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동산이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에 편입되어 있을 때는 제조물의 범위안에 포함된다.

5) 손해배상의 범위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손해도 사망 또는 신체장해 및 개인적 사용에 이용된 재산으로 한정되며 그 이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은 EC지침의 대상의 범위로서 제외함으로써 각국의 국내법에 신축성있게 위임되었다. 이 경우의 재산은 500ECU까지는 자기부담으로 공제된다.

그리고 인체의 손해에 대하여서는 대량으로 동종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이 팽대하게 된다. 그래서 제조업자에 가혹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책임한도액을 설정함에 있어서 옵션사항으로 유보되어 각국에 위임하였다.

B) 인과관계

인과관계(因果關係)란 일정한 선행사실이 없었더라면 다른 일정한 후행사실도 없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관계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민법상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논할 경우와 형법상 구성요건이 일정한 결과의 발생을 요구하고 있는 결과범에 대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피해자가 피해구제를 청원하기 위해서는 인과관계의 입증이 필요하다. 즉 제조물의 결함이 유통한 시점에 존재하였고 그 결함에 의해서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러한 입증을 하기란 쉽지 않은 것이다. 그리하여 인과관계의 곤란함을 예상하여 증명책임보다 일층 완화된 증명검감의 가능성을 제시해 놓고 있다.

7) 책임주체

책임주의(責任主義)란 ‘책임 없으면 형벌 없다’는 원리를 기초로 책임 없으면 범죄는 성립하지 않고 형량도 책임의 대소에 따라서 결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책임의 범위내로 형벌권을 한정함으로써 국가의 형벌권으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단이 된다는 것이다.

유럽에서는 광범위한 책임주체를 인정하고 있으며 완제품 및 부품의 제조업자 이외에 제조자로서 표시를 한 자, 수입업자, 유통업자도 책임주체가 된다. 특히 유통업자는 제조업자를 인지할 수 없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인 책임주체가 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8) 제조업자의 면책사유

배상책임주체가 제조물책임으로부터 면책될 수 있는 사유를 개별조항으로 묶어서 규정하고 있다.

-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유통시키지 않은 제조물일 때
- 전후 상황을 고려하여 볼 때 제조업자가 제조물을 유통시킨 시점에서는 손해를 발생시킬만한 결함이 존재하지 않았던지 또는 결함이 유통 후에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있을 때
- 제조업자가 그 제품을 영업용의 판매 등의 경제적 목적을 위해서 제조하거나 또는 유통시킨 것이 아닌 제조물일 때
- 결함이 공공기관의 강제적 기준에 부합하고 있는 경우일 때
- 제품이 유통에 놓여진 시점에서 그 당시의

과학이나 기술수준에서 제조업자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을 경우일 때

- 부품 제조자에 대하여서는 그 결함이 제품의 구조 또는 제품의 제조자의 지시에 따라서 발생한 결과에 기인할 경우일 때

9) 책임주체가 복수일 경우

EC지침에 근거하여 복수의 책임주체가 존재할 경우에는 각각의 책임주체는 연대책임의 관계에 있다. 그리고 구상권의 행사에 대하여서는 각국의 국내법에 의해 신축성 있게 적용하여 해결한다.

10) 책임기간

모든 시효에 관해서 원고는 손해와 결함 및 제조업자를 인지하였거나 인지한 때로부터 3년 이내, 그리고 유통에 놓여진 시점부터는 10년으로 3년의 소멸시효에 대한 중단 혹은 중지의 사유는 각국의 국내법에 따른다. 그리고 이러한 10년의 시효는 제척기간으로 간주한다.

6. 기타 유럽 국가들

EC와 같은 대륙을 형성하고 있고 또 그 역내에서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은 국가간 교역상의 장벽을 제거할 필요가 대두되었다. 그래서 당초 1966년 1월 1일에 EC EFTA에 가맹한 19개국으로 구성되는 유럽경제영역(European Economic Area : EEA)조약을 발효하기로 예정하였다. 또한 EFTA의 대부분의 가맹국이 EC에 가맹을 신청하고 있었던 당시 사정의 영향으로 EC지침을 기초로 한

제조물책임법의 입법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1993년 6월까지 모두 완료하였다.

1988년 8월 현재 EFTA가맹국가의 PL입법현황

국 가	입법시기(시행)
1 오스트리아	1988. 7. 1
2 노르웨이	1988. 1. 1
3 핀란드	1991. 9. 1
4 아이슬란드	1992. 1. 1
5 스웨덴	1993. 1. 1
6 리히텐슈타인	1992. 11. 12 제정되었으나, 시행은 현일까지 미지수임
7 스위스	1994. 1. 1

7. 끝을 맺으며

구주의 각국 정부는 물론 기업이나 소비자들도 제조물책임법이 그들의 관념과 실정에 맞게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다. 기업은 제조물책임법의 기본정신에 따라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여 제품의 안전성과 내구성 진작에 힘썼음은 물론이다. 항상 제품의 원외성을 염두에 두고 또 소비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제조물을 설계하고 제조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왔다.

우리나라도 이제 PL시대에 성큼 들어와 있다. 정성과 최선을 다하지 않고 막연히 제도의 시행에 대한 걱정이나 불만을 토로해서는 안될 것이다. 오늘날 우리의 시대에는 또 현대의 우리사회에서는 무엇보다도 적극적으로 소비자를 받드는 그러한 기업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시대적 요청

으로 선택의 문제가 아닌 필수적 사항이다.

또한 소비자도 제조물책임법의 본래의 정신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사고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한다. 사용수칙을 성실히 준수하고 항상 안전성을 확인하며 정성있는 자세로 제조물을 사용하도록 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된 작금에 지나친 기대나 터무니없는 욕심을 품어서는 아니된다.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는 일에 소비자도 동참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사용자의 지나친 부주위와 덕없는 요용이나 남용 그리고 약용까지 제조물책임법이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어느나라에서나 공통된 사항이다.

정부는 제조물책임법이 제대로 정착되어 소비자의 권익이 신장됨은 물론 기업의 체질개선과 경쟁력이 강화되고 국민경제가 발전할 수 있도록 기타 보완제도의 정비를 게을리 해서는 안될 것이다. 제조물의 안전과 관련된 수많은 기타 법령을 정비하고 분쟁해결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제도개선 노력에 지속적인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와의 교역이 많은 유럽의 PL법의 특징을 살펴본 것이다. 우리보다 선진국이며 우방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각 나라마다 그 나라 특유의 토양과 습속에 따라 특징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유럽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앞으로도 유럽국가와의 PL의 흐름을 예의 주시하며 분석하여야 하며 또 소화해서 우리나라 사정에 맞게 우리의 PL법도 따라서 변화하는 시대에 호응하여 접목하여 발전시켜 나가는데 게을리 해서는 안될 것이다. ♣